

인천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단2627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원 담당변호사 문슬기

피 고 1. D

2. E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해종

3. F

변 론 종 결 2022. 12. 1.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피고 F는 원고 A에게 53,482,083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44,677,0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F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D, F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3,482,083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44,677,0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피고 E 사이에 2017. 8. 3. 체결된 증여계약은 118,159,159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며, 피고 E은 원고 A에게 53,482,083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44,677,0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D, E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1) 원고 A, B 및 피고 F는 원고 C의 자녀이고, 피고 D은 피고 F의 법률상 배우자이며, 피고 E은 피고 D의 부친이다.

2) 피고 D은 2012. 12. 17. G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273,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 F와 함께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3) 피고 D은 2017. 8. 3. 피고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피고 F는 2020. 2. 11. 인천가정법원에 피고 D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가정법원 2020드합10197), 피고 D 또한 2020. 3. 20. 피고 F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인천가정법원 2020드합10470. 이하 피고 F의 위 본소 및 피고 D의 위 반소로 인한 소송을 통틀어 '이 사건 이혼 등 소송'이라 한다).

5) 인천가정법원은 2022. 1. 14. 이 사건 이혼 등 소송에 관하여 피고 F의 본소 이혼, 위자료 청구 및 피고 D, F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하여 위 피고들의 이혼, 재산분할 및 피고 D의 위자료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위 피고들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인천)2022르10176(본소), (인천)2022르10183(반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25, 26호증,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A은 2008년 11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피고 F에게 101,953,533원, 피고 D에게 39,782,000원을, 원고 B은 2012년 6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피고 F에게 31,000,000원, 피고 D에게 3,000,000원을, 원고 C는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피고 F에게 14,000,000원, 피고 D에게 28,700,000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피고 D은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원고 A에게 2,984,900원, 원고 C에게 2,077,076원의 손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D, F의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서로의 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D, F는 연대하여 ① 위 각 차용금에서 피고들이 상환한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 A에게 50,497,183원¹⁾,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42,6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②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따라 원고 A에게 2,984,900원, 원고 C에게 2,077,076원을 불법행위에

다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이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E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각 채무 합계액

118,159,159원(= 50,497,183원 + 20,000,000원 + 42,600,000원 + 2,984,900원 + 2,077,07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 E은 원고 A에게 53,482,083원(= 50,497,183원 + 2,984,9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44,677,076원(= 42,600,000원 + 2,077,0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D, E의 권리남용 항변에 관하여

피고 D, E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오로지 피고 F와 이혼하게 된 피고 D과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데에 목적이 있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오로지 피고 F와 이혼하게 된 피고 D과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 E의 권리남용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E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에 관하여

피고 E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늦어도 2019. 12. 2.에는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한 2021. 9. 30.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이 규정한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을가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9. 12. 2. 피고 D, E에게 “왜 그쪽으로 명의가 옮겨졌어요?”, “왜 명의가 이쪽으로 갔어요? 내 돈 안 갚으려고 옮겨졌어요?”, “나도 사해행위취소 소송 걸 거예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2019. 12. 2.경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외에 위 증여계약이 피고 D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즉 피고 D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및 피고 D에게 그와 같은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은 이유 없다.

라. 본안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 D, F가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지 여부

갑 제1 내지 3, 8, 18, 20 내지 22, 24, 25,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D, F의 계좌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돈을 이체한 사실, 피고 D, F는 위와 같이 원고들이 이체한 돈 중 일부는 이체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도 한 사실, 피고 D, F는 이 사건 이혼 등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D, F의 계좌에 이체한 각 돈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 F가 위 각 돈의 변제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D, F에 대한 대여는 2008년 11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8년이 넘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합계액 또한 1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피고 D, F와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 D, F를 상대로 위와 같이 대여한 금액의 정산 또는 차용증 등 처분문서의 작성 또한 요구하지 아니하다가 피고 D, F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2019. 12.경에서야 위와 같이 이체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전소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채권자의 모습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 원고들이 피고 D, F에게 이체한 각 돈에 관하여 변제기 또는 이율 등을 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 D, F는 원고들로부터 일정한 시기에 고정적인 비율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수십 차례에 걸쳐 불규칙적인 시점에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액수의 돈을 수시로 지급받았다. 나아가 피고 D, F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에 관하여 보더라도, 차용금의 변제라면 어떠한 차용금에 관한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라고 특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D, F가 지급한 돈은 그 지급시점과 금액이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이 원고들의 대여금 중 어느 부분의 변제에 충당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거래는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양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 D, F의 주장과 같이 형제자매 또는 친인척 사이의 금전적 원조 및 그에 대한 반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피고 D, F 스스로 원고들로부터 이체받은 돈 중 일부를 반환한 사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이혼 등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아직 변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구하고 있는 특정 이체금액 부분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 사건 이혼 등 소송의 제1심은 피고 F가 주장한 원고들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인지 여부, 그 채무의 존재 및 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F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D이 원고 A, C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금액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1)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D이 원고 A, C의 동의 없이 그들의 휴대전화로 약 2년의 기간 동안 소액결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피고 D을 같은 내용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피고 D이 원고 A의 동의 없이 소액결제를 하였다고 볼 만한 단서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D이 원고 A, C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금액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피고 D이 원고 A, C의 동의하에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 관하여 피고 D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41조가 정하는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성립하는 것인데, 피고 D이 원고 A, C의 동의하에 위 원고들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였다면 그와 같은 동의는 피고 D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여 이익을 얻을 법률상 원인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피고 D이 얻은 이익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D, F에 대한 차용금 채권 및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피고 E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마.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F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판사 양승우

별지

1) 원고 A은 2022. 10.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1쪽에 피고 D, F의 각 차용금 중 상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49,119,183원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